



보도	2024.8.28(수) 석간	배포	2024.8.27.(화)		
담당부서	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	책임자	팀 장	손기숙	(02-3145-7977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최석원	(02-3145-7975)

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-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 및 지정제도 관련 주요 FAQ 안내 예정 -

주요 내용

- ◈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(9.1.~9.19.)에 맞추어 「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」를 실시합니다.
- √ 12월 결산 상장사(코넥스 제외),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금년 9.1일부터 9.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.
- √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.28일(수)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 협회, 코넥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(검색어: 금융감독원)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.
- ◈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,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√ 주기적지정·직권지정 사유, 구체적인 지정기간·방법 등 주요 제도 내용과 함께,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·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이 알기 쉽게 소개됩니다.
- √ 특히, 금년부터 건설·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1 배 경

- □ 외부감사법에 따라 **주기적 지정* 대상 회사** [상장사 (코넥스제외),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]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**회계법인은**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*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
- □ 주기적 지정 대상인 **12월** 결산법인 (2,590여개*) 및 **상장사** 감사인 (40여개)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'24.9월 중 도래**함에 따라,
 - * 상장사 2,510여 개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80여 개
 - ** 회사는 '24.9.1. ~ 9.19., 감사인은 '24.8.31. ~ 9.13.
 - 금융감독원은 회사·감사인이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다 잘 이해 하고 지정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,
 - 유튜브 등 **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주요 문의 사항**을 안내하는 **동영상**과 **설명자료**를 공개할 예정



2 주요 설명 내용

- □ (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)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·제출* 요령을 안내
 - *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(http://eacrs.fss.or.kr) 을 통해 제출
 - **회사**는 과거 **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**,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(대형 비상장사), **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** 등을 기재하고,
 -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,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, 손해 배상 능력 등을 기재하여야 함

- □ (지정제도 주요 내용) 감사인 지정 사유(주기적 지정, 직권지정), 지정 기간, 지정 방법, 재지정 신청, 산업 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 소개
 - 특히, 금년부터 건설·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

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 개요

업종별 시행 시기

◈ '24년 지정 통지

- **[●] 건설** 등 수주산업, ^② **은행** 및 저축은행업,
- [◎] 보험, ^④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

◈ '25년 지정 통지

- ^⑤ 기초**화학**물질 제조업,
- [©]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
- [♥]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- ³ 운수 및 **창고**업
- [®] 통신·엔터테인먼트·방송업·게임업,
- [®] 소프트웨어 개발업.
- **☞ 과학** 및 기술 서비스업

감사인 지정 절차

1 지정 기초자료 제출 (회사, 감사인 → 금감원)

- •회 사: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기재
- 감사인 : 산업전문가 보유 여부 기재

2 지정 감사인 통지 (금감원 → 회사, 감사인)

• 회사의 전문성 희망 업종을 지정감사인에게 통지

3 회사와 감사인간 협의

• 산업전문가의 업무배치 등 협의

4 재지정 신청 (회사, 감사인 → 금감원)

•회 사:지정 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

못한 경우

•감사인:보유 전문가보다 지정회사가 많아

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

□ (주요 문의 사항)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회사·감사인의문의가 빈번하였던 사항을 Q&A 형식으로 안내

※ 주요 문의사항(예시)

- 감사인 지정후 **단순히 회사 의사**에 따라 **다른 감사인을 재지정**해 줄 것을 금감원에 **요청**하는 경우 **유의 사항**은?
- ➡ 회사는 지정 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群* 또는 그보다 상위群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주기적지정, 상장추진,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群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* 회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4개 群으로 분류하고, 감사인도 공인회계사 수 등 분류기준에 따라 4개 群으로 분류하여, 회사보다 감사인의 群이 높거나 같도록 지정하고 있음

한편, 이러한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·본통지를 불문하고 **1회에 한해 가능**하고, 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**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**, 감사인 지정 **2년차·3년차**에 전년과 **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**받은 회사는 **이러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**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재무비율 악화, 횡령·배임혐의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**감사인 지정을 받은 이후 해당 지정사유**가 **해소**되거나 **상장폐지** 등 회사의 **상황이 크게 변동**된 경우 **지정**이 **해제**되는지?
- ⇒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,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(2, 3년차 지정 포함)동안 지정됩니다.

3 향후 계획

- □ 유튜브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 → 업무자료 → 회계)와 유과기과 홈페이지*에 동영상, 설명자료 등 게시
 - * 한국상장회사협의회(<u>www.klca.or.kr</u>), 코스닥협회(<u>www.kosdaqca.or.kr</u>), 코넥스협회 (<u>www.konex.or.kr</u>), 중소기업중앙회(<u>www.kbiz.or.kr</u>), 한국공인회계사회(<u>www.kicpa.or.kr</u>)
 - 회사·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
 - * 온라인 문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<u>www.fss.or.kr</u>) : 민원 · 신고 → Q&A 신청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(<u>http://eacrs.fss.or.kr</u>) : 회사 · 제출서류 → 열린창구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